

## 제21장 예외

### 제21.1조 일반적 예외

1. 제2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)부터 제7장(무역구제)까지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2. 제8장(서비스 무역), 제9장(금융서비스), 제10장(통신) 및 제13장(전자상거래)<sup>1</sup>의 목적상, GATS 제14조(그 주석을 포함한다)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### 제21.2조 필수적 안보

이 협정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21조와 GATS 제14조의2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

### 제21.3조 과세

1. 이 조의 목적상,
  - 가. **조세 협약**이란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또는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의미한다. 그리고
  - 나. 과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    - 1) 제1.6조(정의)에 정의된 관세, 또는
    - 2) 제1.6조(정의)에 정의된 관세 정의의 나호부터 마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조치
2.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3. 가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모든 조세 협약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과세조치와 관련된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의 한도 내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.

<sup>1</sup> 제21.1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.

- 나. 양 당사국 간의 조세 협약의 경우, 그 협약상의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.
4. 제3항에도 불구하고, 이 협정은 그에 상응하는 권리 또는 의무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부여 또는 부과되는 경우에만 과세조치에 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한다.
    - 5. 가. 제12.12조(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)는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    - 나. 제12.9조(수용 및 보상)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그러나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어떠한 투자자도 제12.9조(수용 및 보상)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. 과세조치에 대하여 제12.9조(수용 및 보상)를 원용하려고 하는 투자자는, 제12.12조제2항(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)에 따른 피청구국에 대한 서면 협의 요청을 제출하는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권한 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하여야 한다.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, 검토에 동의하였으나 제12.12조제2항(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)에 따른 피청구국에 대한 서면 협의 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, 투자자는 제12.12조제3항(한쪽 당사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해결)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.
  6. 이 조의 목적상, **권한 있는 당국**이란 다음을 말한다.
    - 가. 중국의 경우,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, 그리고
    - 나. 한국의 경우, 기획재정부 세제실장

#### 제21.4조 정보의 공개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,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,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#### 제21.5조 국제수지 보호조치

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 곤란에 처하여 있거나 그 위협을 받고 있을 경우, 그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, 그리고 「국제통화기금협정」에 합치되도록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.